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29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361호)	이만희의원	2025.11.18.	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6.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및 축조심사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185호)	조인철의원	2026.01.20.	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6.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및 축조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242호)	김상훈의원	2026.01.22.	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6.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및 축조심사
---	-------	-------------	--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3. 17.)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3. 24.)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

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다. 「화장품법」 제13조

라. 「의료기기법」 제24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